

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14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0. 3 .17.

제 출 자 : 김완규의원외3인

1. 개정이유

지방의회 정기회제도가 년1회에서 년2회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(안 제2조)
- 나.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(안 제3조)
- 다.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0일,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 집회(안 제4조)
- 라.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, 결산안의 승인, 기타 부의안건 심의·의결, 2차 정례회는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·의결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- 마. 준칙안 : 별첨

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3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2회 개최한다.

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.

제4조(집회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·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.

제5조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취

지방자치법 제38조(정례회)

-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,
- ②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(정례회의 집회일등)

-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,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·8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1. 제1차 정례회는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
 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
- ③ 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 ”

강 원 도

우 200-700 /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/ 전화 (0361)249-2112 행:2112 FAX 249-4013
기획관실 기획관:김정삼 의회협력담당:심재철 담당자:이경희

문서번호 기획 13130 - 10

시행일자 2000.1.17(3년)

공개여부 ()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의회사무국(과)

선달	작성	생략	지시		
절주	일자	2000. 1. 17	결재·공포	부의장	생략
	번호	49		과장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
	처리과			정책지원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
	담당자	최수권		담당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
	심사자			심사일	

제 목 0 0 0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 통보

1.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'99.8.31 법률제6002호 및 '99.12.31 대통령령제16672호로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「정례회제도」가 도입됨에 따라

2.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「0 0 0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」을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·군에서는 동 조례의 제정·공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 임 : 1. 0 0 0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 1부.
2. 정례회제도 관련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강 원 도 지

전길 기획관리실장 권역인



수신처 : 더(1-18)

○○○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○○○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
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 (※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5일 이내)로 한다.

제4조(집회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○월 ○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·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○월 ○일에 집회한다.

※ 각급 자치단체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의와 예산심의수요, 기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심의일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실정에 알맞게 자율적으로 규정

< 관련 법령 >

-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
 - 행정사무감사 회기일수(시·도: 10일 이내, 시·군·자치구: 7일 이내) 및 제1차 정례회 회기내 실시
 -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
 - 결산서 작성기한(출납폐쇄후 80일 이내) 및 제1차 정례회 회기내 처리
 - 지방자치법 제118조
 - 예산안 편성기한(시·도: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·군·자치구: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)
 - 예산안 의결기한(시·도: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, 시·군·자치구: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)
 -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 제38조(2000.1월 중 공포 예정)
 - 출납폐쇄기한(회계연도 종료 후 2월) 및 결산서 제출기한(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)
- ※ 결산서 제출기한: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→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개정계획

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·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정례회제도 관련 신·구조문 대비표

지 방 자 치 법		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	
(현 행) 종 전	개 정 (9 9 . 8 . 3 1)	(현 행) 종 전	개 정 (9 9 . 1 2 . 3 1)
<p>第38條(定期會) 地方議會의 定期會는 市·道에 있어서는 매년 11月 20日에, 市·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매년 11月 25日에 集會한다. 다만 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集會한다.</p> <p>第41條(開會·休會·閉會와 會議日數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定期會의 會期는 市·道議會의 경우 40日이내, 市·郡 및 自治區議會의 경우 35日 이내로 하고, 臨時會의 會期는 15日 이내로 한다.</p> <p>③年間 會議總日數는 定期會 및 臨時會를 합하여 市·道에 있어서는 120日, 市·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80日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第38條(定例會) ①地方議會는 매년 2回의 定例會를 개최한다.</p> <p>②定例會는 集會日 기타 定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</p> <p>第41條(開會·休會·閉會와 會議日數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定例會의 會期는 年 2回를 합하여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----- 定例會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	<p>(신설)</p>	<p>제19조의4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.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·8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</p> <p>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</p> <p>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